

 국토교통부		<h1 style="margin: 0;">보도자료</h1>		국민의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 
		배포일시	2018. 10. 22.(월) 총 4매(본문 2, 붙임 2)	
담당 부서	물류정책과	담당 자	• 과장 백현식, 사무관 박형렬, 주무관 신성일 • ☎ (044) 201-3997, 4005	
보도 일시		2018년 10월 23일(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0. 22.(월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

국토부,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불시 합동단속 철폐

적발 시 주유업자 최대 5년간 카드정지·화물차주 1천만 원 벌금·환수 조치

□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한국석유관리원·지자체 대표와 업무협약(MOU)*을 체결하고 전국 243개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부정수급 방지방안 및 단속 요령 등을 교육한다.

* 10월 23일 오전 11시, 세종컨벤션센터

○ 주유소 단속 권한이 있는 한국석유관리원과 지자체가 협력하여 합동단속을 시행할 경우 주유소와 화물 차주를 동시에 조사할 수 있어 단속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.

* (석유관리원) 석유사업법에 따라 주유소 대상 가짜석유 판매 등 단속권 보유, (지자체)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부정수급 가담자에 대한 단속권 보유

□ 업무협약서에는 ①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②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업소 합동단속 ③ 정보공유 등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국토부, 지자체, 한국석유관리원의 상호 협력사항 등이 내용에 담길 예정이다.

○ 또한, 지자체 담당공무원의 단속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실시하는 교육에서는 ① 정부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방안 ②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협의체 구성 및 단속방법 ③ 유가

보조금 관리시스템 운영방법 ④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청취 등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.

- 11월부터 시작되는 합동 불시단속에서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
 - 가담·공모한 주유업자에 대해서는 최대 5년간 유류구매카드 거래가 정지되고, “카드깡” 등은 행정처분과 함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(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)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하고,
 - 화물차주에 대해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병행하여 1년 이내의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와 기 지급받은 유가보조금은 환수할 예정이다.
- 국토교통부 김경욱 교통물류실장은 “전국 226개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해 나가겠다”고 밝혔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박형렬 사무관(☎044-201-3997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◆ 합동점검 등 현장단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관계기관과 업무협력 MOU 체결* 및 단속요령 등 지자체 공무원 교육 실시

* (석유관리원) 석유사업법에 따라 주유소를 대상으로 가짜석유 취급, 석유수급 보고 확인 등 현장 단속권을 보유, (지자체)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4조의2에 의거 부정수급 가담자에 대한 단속권 보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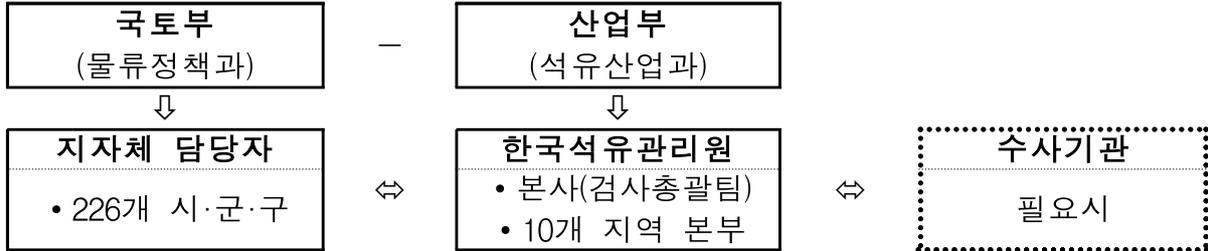
□ 업무 협약식

- (時 · 所) '18.10.23(화) 11:00~11:25, 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
- (체결기관) 국토교통부(교통물류실장), 한국석유관리원(이사장), 지방자치단체 대표*(울산광역시 경제부시장)
 - * 자동차세 주된 특별징수의무자 대표 서명 : 타 광역지자체로부터는 대표 서명 위임 동의절차 진행 완료
- (주요내용) ①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협의체 구성 및 운영
②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업소 합동점검 ③ 상호 정보공유 등

□ 지자체 공무원 교육

- (時 · 所) '18.10.23(화) 11:25~16:00, 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
- (교육대상) 전국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담당 지자체 공무원 243명
- (교육내용) 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방안
② 유가보조금 제도의 이해 및 관련 규정 ③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협의체 구성 및 단속방법 ④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 운영방법
⑤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청취 등
- (교육주관) 국토부(물류정책과), 트라이언소프트(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 개발·운영사) 공동 주관, 카드5사(신한, KB, 우리, 삼성, 현대) 협조

□ **협의체 구성**



□ **합동 단속계획**

- (단속근거)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, 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」
- (단속반구성) 지자체·한국석유관리원으로 단속반을 구성하여 합동 단속을 수행하고, 수사 필요 시 경찰이 지원
- (단속대상업체) 국토부·한국석유관리원에서 의심업소 리스트를 선정*하고, 합동단속 시 활용
 - * 의심거래 건수 상위업체, 총 경유판매량 중 유가보조금 비중이 80%이상인 업체 등
- 지자체 담당자 점검 노하우 공유 및 차주·주유업자 경각심 고취를 위해 시·군·구 별 의심주유소 1개소 이상 점검 실시
 - * 1차('18.11~12) : 의심주유소 선별 점검 전국 50개 내외 주유소
 - 2차('19.1~3) : 1차 점검업소를 제외한 전국 주유소 전수점검
- (주요단속내용) 부정수급 행위 등을 합동점검 시 주유소에서 확인
 - 선정된 의심업체(주유소)에서 유가보조금이 지급된 유류가 실제 화물운송사업자에게 주유가 되었는지 판매내역 확인
 - * 해당 주유소를 방문하여 POS 단말기에 주유한 내역을 확인하고,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에서의 주유내역과 비교하여 이상여부 확인
 - POS 단말기에 주유한 내역이 없는 경우 별도의 외상거래 내역이 있는지 확인하고, 외상거래 내역은 반드시 현장조사에서 파악